

「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6일

상 주 시



##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이유

「2023년 상반기 상주시 행정기구 개편계획」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 및 업무 이관·인수사항을 반영하여 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부서 신설·폐지 및 명칭 변경

- ▶ 행정복지국 소관: 노인장애인복지과(신설)
- ▶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(폐지)
- ▶ 기획예산담당관 → 기획예산실(명칭변경)
- ▶ 공보감사담당관 → 공보감사실(명칭변경)
- ▶ 미래전략추진단 → 미래정책실(명칭변경)
- ▶ 안전재난과 → 안전재난실(명칭변경)

- ▶ 가족복지과 → 아이여성행복과(명칭변경)
- ▶ 경제기업과 → 투자경제과(명칭변경)
- ▶ 스마트밸리운영과 → 스마트농업과(명칭변경)
- ▶ 민원토지과 → 행복민원과(명칭변경)

#### 나. 국별 업무 조정

- ▶ 행정복지국(제5조제2항)
  - 제7호 ‘혁신 종합계획 수립 및 혁신에 관한 전반업무’ 삭제
  - 제45호 ‘담당관’ 을 ‘실’ 로 변경
- ▶ 경제산업국(제6조제2항)
  - 제4호 ‘직업소개소, 노정, 고용촉진업무에 관한 사항’ 을  
‘직업소개소, 노정업무에 관한 사항’ 으로 변경
  - 제6호 ‘기업지원에 관한 사항’ 을 ‘기업유치·투자유치 및 지원에  
관한 사항’ 으로 변경
  - 제34호 ‘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’ 삭제(건설도시국으로 이관)
  - 제47호 ‘귀농귀촌에 관한 사항’ 삭제
  - 제48호 ‘한방산업단지에 관한 사항’ 신설
  - 제49호 ‘휴양림에 관한 사항’ 신설
- ▶ 건설도시국(제6조의2제2항)
  - 제7호~제13호 삭제(안전재난 관련 업무)
  - 제24조 ‘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’ 신설

#### 다. 사업소 개편에 따른 조문 수정

- ▶ 제16조제3호의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분장사항 삭제
- ▶ 제16조제5호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분장사무 개정
- ▶ [별표2]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 ‘상주시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’ 삭제

## 라. 조례 근거 법령 현행화

- ▶ 제17조제1항: 법 제3조제3항·제4항 및 제7조제2항·제4항  
→ 법 제3조제3항·제4항 및 제7조, 제10조
- ▶ 제21조: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→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

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6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(참조: 총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연락전화: 054)537 - 7164
- E-mail: kjh6850@korea.kr / FAX: 537-6089
- 시 홈페이지: [www.sangju.go.kr](http://www.sangju.go.kr)(입법예고란)
  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 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  - 의견제출할 곳 : (우37211)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

## 4. 그 밖의 사항

이 조례 개정안의 상세내역은 상주시 홈페이지([www.sangju.go.kr](http://www.sangju.go.kr)  
→ 행정정보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: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붙임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: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명(단체명):

주 소:

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